

이나 조례 관련조항을 개인적 판단에 위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 특히 ‘시의 공무원’이라는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상임이사 선임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자칫 병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오류를 발생시킬 소지도 있으므로 비상임이사에 대한 자격 규정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국장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결산완료 기한의 단축에 관한 사항은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2003년 3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협령 저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요컨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당연히 비상임이사에 관한 조항은 자격조건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판단과 해석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미구성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일치)

가. 수정이유

- 비상임이사의 자격조건 중 시의 공무원이라는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실·국장 등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개정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이라는 규정을 “당해 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 이상의 공무원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수정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을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사강남병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시의 보건복지국장·시정기획관”을 “당해업무와 관련이 있는 3급이상의 공무원 중 시장이 지정하는 2명”으로 한다.

제17조중 “3월내”를 “2월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4
------	-----

2003년 3월 2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 (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건설국장·시정기획관)의 직명이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결산기일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임.

 주요골자

- 당연직 비상임이사중 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함(안 제9조제2항)
 - 건설국장·시정기획관 →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
-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함(안 제22조제1항)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포함된 “건설국장과 시정기획관”을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변경하고, 시설관리공단 결산기한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협행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건설국장과 시정기획관”的 직명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경비 차원에서 당연한 사항이나, 이를 변경하면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의 공무원 2명”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나친 포괄적인 위임으로 생각함.
- 따라서, 최소한 “공단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국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결산기일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서 2월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사는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완료하도록 하였으므로 결산기일을 지방공기업법과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의원 14명 전원일치 의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